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03호
- 나. 발 의 자 : 김원중 의원(찬성자 40명)
- 다. 제 출 일 : 2022년 8월 29일
- 라. 회 부 일 : 2022년 9월 2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정책, 제도,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(안 제5조의2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입법예고(2022. 9. 7. ~ 9. 11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관련법령(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‘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위원회’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공공미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「지방자치법」

-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- 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- ‘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’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공공미술의 정책, 제도,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¹⁾하기 위하여 설치(2017.11.19.)해 5년간 운영하였으며, 현행 조례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기한 만료(2022.11.18.) 예정임

□ 공공미술위원회 개요

- 설치 근거: 「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설치 목적: 공공미술의 정책, 제도,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자문·심의
- 설치 시기: 2017. 11. 19.
- 존속 기한: 5년(조례 부칙 제10조)
- 심의 대상: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, 제도 개선, 미술작품 설치,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 등
- 위원 구성: 정원 15명 / 현원 11명
 - (위원장)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
 - (위 원) 미술·기획·건축·조경·유지관리·디자인·도시계획 등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
- 위원 임기: 1년(1회 연임가능)
- 개최 주기: 월 1회(집합 또는 서면)

1) 「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공미술의 정책, 제도,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(이하 "공공미술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6조(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) 공공미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
2. 공공미술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
4.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5. 시, 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,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요청하고, 공공미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공공미술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는 오는 11월 18일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‘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’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의 자동 폐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

현행	개정안
제5조(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) (생략)	제5조(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)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5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.

- 다만, 현행 조례의 부칙 제10조에 ‘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’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본칙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재차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
- 또한,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현행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하고 명확한 조문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

「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

부칙
 제1조~제9조(생략)
제10조(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

담당자	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 고 은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